

대구예술대학교 축구부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9.11.14. 교무위원회)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구예술대학교 축구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구부 재정) 운영 규정 제2장(재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금이라 함은 축구부원이 대학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후원금이라 함은 외부에서 대구예술대학교 축구부에 기탁(기부)하는 후원금을 말하며 축구부 학부모 자체운영회의 자치경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축구부의 재정 및 예산 편성은 축구특기자(10명)로 입학한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으로 하며 그 수입의 65%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단, 축구특기자의 정원(40명)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 축구부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산 편성 시 최대산정 인원은 40명으로 제한 한다. 축구특기자의 정원이 부족한 경우 일반 축구부원의 포함 순위는 사회체육 전공 소속의 부원을 우선순위로 하되 저학년 학번순으로 산정한다.
4. 등록금을 납입 후 휴학한 학생의 경비는 납입 학기 재정으로 산입 한다.
5. 축구부 재정 중 등록금 지원으로 하는 예산은 장학금, 대회참가비, 유니폼 및 용품구입비, 연습경기, 집기비품, 기타 운영비 항목으로 국한한다. 단, 교외(국가, 사설 및 기타) 장학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6. 학부모 자치회 자치경비(자체회비)는 학부모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한다.
7. 축구부 예산 미집행 금액은 이월하지 않는다. 단, 후원금은 적립할 수 있다.

제3조(축구부 운영) 운영규정 제4장(축구부 운영 및 관리부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구부 관리책임자는 사회체육 전공주임교수가 한다.
2. 축구부 행정사무 담당자는 계약직 관리코치가 되며, 관리 부처는 학생처가 한다.
3. 대회출전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1>

제4조(축구부원의 관리) 학생관리에 대한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구부원) 선발된 축구부원 명부는 매학기 초 학생처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명부<양식3> 제출 후 변동 사항이 있을 시 행정사무 담당자가 즉시 학생처로 변동사항을 서면<양식2>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수업일수 및 출석인정) 축구부원이 국제대회 또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 출전, 하여 수업에 참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출석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외의 수업은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수업 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전에 학사 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수업 관련 부처에 승인을 얻어 별도의 보충수업을 실시 할 수 있다.
3. 대회출전, 교외 전지훈련 등 외부에서 진행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안전예방교육과 기타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정 및 지침 외) 이 규정 외에 축구부 운영에 관한 타 기관(협회)과 축구부와 관계가 있는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제정 이전 행정진행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1월부터 14일부터 시행한다.

<양식1>

경기결과보고서 (대구예술대학교 축구부)

결 재	담 당	지 도 교 수

대 회 명		상 대 팀	
일 시		날 씨	
장 소		결 과	

출전선수	

RESERVE	시간	IN	OUT	부상자

시간	득점	도움

경 기 총 평	
---------	--

<양식2>

축구부원 변경서

(대구예술대학교 축구부)

결 재	담 당	지 도 교 수

아래와 같이 신규가입(), 탈퇴()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신규 가입			
전공명	학 번	성 명	포지션

학적 변동				변 동 사 항	
전공명	학 번	성 명	포지션	휴학	자퇴

붙 임 : 축구부 최종 명단

보고일 : 20 . . .

